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1. 13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. 13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3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형식)

가. 제안이유

- 공단 문화사업본부의 별도 재단화 사업에 따른 조례의 일부내용을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보완 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사업영역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(안 제1조)
 - 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 ⇒ 주차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
- 사업영역 조정에 따른 조항삭제(안 제17조제1항)
 - 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증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437호 |
| 의결년월일 | 2001. 3. 14 (제85회) |

제출년월일 : 2001. 1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공단 문화사업본부의 별도 재단화 사업에 따른 조례의 일부내용을 사업 목적에 부합토록 보완 개

정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사업영역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(안 제1조)
 - 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 ⇒ 주차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
- 사업영역 조정에 따른 조항삭제(안 제17조제1항)
 - 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”을 “주차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문화사업의 제반사업은 부천문화재단법인 창립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<u>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<u>주차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</u> |
| 제17조(사업) ①(생략) 1~3(생략) 4. <u>복사골문화센터 및 시민회관의 관리운영</u> 5~7(생략) ②~④(생략) | 제17조(사업) ①(현행과 같음) 1~3(현행과 같음) 4. <u>삭제</u> 5~7(현행과 같음) ②~④(현행과 같음) |